



## 사업투자손실...실패가 주는 또 다른 혜택

### 사례

D사장은 이민 초기에 토론토에서 살다가 밴쿠버로 이주하였습니다. 캐나다 이민 후에 여러 사업을 하면서 낯선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. 하지만 열심만이 성공을 가져다주지는 않았고 한국에서 사업경험이 없었던 D사장은 몇 번의 사업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토론토에서 운영한 식당사업입니다.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큰 규모로 시작했다가 실패를 보았습니다. 그 후 여러 시행착오 후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어느 날 D사장은 한 지인으로부터 과거의 식당 사업손실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D사장은 본인 혼자 100% 주주인 법인형태로 식당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금액을 손해 보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토론토에 있는 과거 회계사의 도움으로 법인의 과거 세금신고 자료와 주주인 D사장의 투자내역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자료를 근거로 어떠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계사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.

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세법상 처리되는 방법이 다릅니다. 개인사업자의 사업손실은 다른 종류의 소득이나 향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법인 손실은 개인 주주가 사용하지 못하고 향후 법인에서 이익이 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세법상 법인은 개인주주와는 구분된 또 다른 세금신고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법인이 향후에 이익을 내지 못하고 청산하면 과거에 발생한 손실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됩니다.

이처럼 같은 사업손실에 대하여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 사업체에 투자한 개인은 공제하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사업투자손실 공제(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)라는 소득공제 항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 제도는 개인주주가 캐나다 중소기업에 투자한 주식 또는 대여금에서 발생한 손실 금액의 50%를 개인소득세 신고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법인 손실을 개인주주가 간접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한편, 사업투자손실은 발생 후 10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양도손실로 성격이 변경되어 향후 양도소득이 있을 때에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용연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. D사장은 식당을 폐업할 때 이러한 세법 내용을 알지 못해서 법인 투자손실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. D사장 법인의 과거 자료를 검토해보니 청산 시점까지 총 \$260,000가량의 법인손실이 발생하였고 이 금액은 D사장이 투자해서 손해 본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D사장에게 다행인 것은 식당을 폐업한 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업손실을 사업투자손실 공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최근 연도인 2015년 세금신고를 수정하기로 하고 사업투자손실을 반영한 수정된 세금신고서와 과거의 법인세 신고자료, 투자 증빙 등 사업투자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습니다. 몇 달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수정 요청내용이 반영된 수정세금신고 확인서와 수표를 받았습니다.

이에 의하면 D사장은 2015년 세금신고시 \$90,000가량의 소득을 신고하였는데 과거 투자손실금 \$260,000의 50%인 \$130,000을 공제한 후에 순소득이 순손실 \$40,000으로 변경되어 2015년 세금 납부액 \$18,000가량을 환급받았습니다. 이와 함께 2015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손실금액인 \$40,000에 대해서는 과거 3개 연도까지의 소득세 신고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세법규정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. 즉, \$40,000의 사업손실을 2014년 소득세 신고에 소급하여 반영하고 2014년 세금 신고를 수정 신고하였습니다. 국세청에서는 D사장의 2014년 수정세금신고도 인정해주었고 추가로 \$12,000을 환급해 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 D사장은 사업투자손실 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\$30,000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.

과거의 실패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게 된 D사장은 '실패는 성공의 어머니'만이 아니라 '실패가 주는 또 다른 혜택'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D사장은 운이 좋은 경우로 법인 손실 발생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손실을 적용하여야 하는 세법 조항을 이용해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. 만약 D사장이 조금만 더 늦었다면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지 못 할 뻔했습니다.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D사장은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실패의 경험이 있는 지인이 생각났습니다.